

『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의 시상부문을 9개 부문에서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중에서 시상부문 없이 3명 이내로 수상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9개 시상부문을 부문 없이 3명 이내로 축소(안 제3조)
- 시상부문별 삭제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조항 수정(안 제5조)

4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상부문을 없애고 수상대상자를 축소하여 전체 시민 중 가장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을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의 희소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